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 대상자

- (1) 본원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시설 입소자로 인정 받은 자)
- (2)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3)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자
- (4) 건강진단 결과 입소 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 (간염, 결핵 등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할 수 없음)

2) 입소 정원

본원의 입소 정원은 29명으로 한다.

3) 모집방법

- (1) 본원의 입주는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대리인)이 입주 신청을 하고 본원과 계약을 통해 입주한다.
- (2)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등 요보호 대상자는 복지시설기관장 및 동 주민센터, 보건소, 지역주민 등의 의뢰를 받아 모집한다.
- (3) 본원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설의 홍보를 하며 이용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입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입소 계약

1) 계약 기간

- (1) 계약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본원과 수급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과의 양방간의 약정한 기간으로 한다.
- (2) 계약 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의 목적

노인 복지법,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의거 중풍, 치매 등 질환 노인에게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10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 한다.

※ 법정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면제받으면 시설과 입소자 모두 처벌됩니다.

구분		금액(원/%)	내역
장기요양 보험급여 항 목	공단지원금	총액의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총액의 20%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경감 대상자는 50% 경감 될 수 있음
비급여 항 목	식사재료비	315,000원	10,500*30일=315,000원
	간 식	60,000원	2,000*30=60,000원
	상급침실이용료		
	기 타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의무

신원 인수인은 관련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가족 및 친인척으로 하고, 어르신에 대해 수발 및 보호 비용에 대한 납부의
무가 있으며, 퇴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르신에 대한 권리 등 일체의 사항을 본원과 협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1) 본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 ① 입주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 ② 입소 생활비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 ③ 입소 생활비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 능력이 없으며,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 ④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⑤ 본원의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 할 경우
- ⑦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주 어르신 본인이나 보호자(대리인)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갖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을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입주된 어르신에 대하여 본원은 시설급여(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기능 평가 및 훈련, 치매관리지원, 응
급지원,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등)을 제공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되 비용 일체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또는 대리인)에게는 부담시키지 않는다.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전 조항 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적절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되 그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2인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보호자를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보호자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처리 절차

1) 응급 조치 사항

- (1) 생활어르신에게 낙상, 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 시 모든 입직원은 본원의 “응급상황 대응 지침서”에 의하여 신속한 대처를 통해 합병증 및 2차 손상 등을 예방한다.
- (2) 응급 처치와 동시에 병원에 후송 조치함과 동시에 ☞간호사 ☞시설장 ☞보호자 등에게 신속한 연락을 취한다.

6.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1) 본원은 시설관리 규칙을 정하고 관리를 하며 입주 어르신은 이를 준수한다.
- (2) 본원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 하신 어르신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손괴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또는 대리인)와 합의하여 처리한다.

7.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1) 서비스 제공시 제공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와 본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은 본원(마리아요양원)이 부담 한다.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설)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 자해, 자살, 무단이탈, 본인의 과실, 병사, 도난, 폭력 또는 외출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원에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구비서류

- (1) 수급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1)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2) 건강진단서
 - 3) 가족관계증명서
 - 4) 의사소견서, 처방전
 - 5) 수급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 6) 연계기록지 - 타 요양원에서 전원시

9.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 4) 제공(이용)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